

## 2025년 농산물 수출 선도조직 육성사업 지원계획(변경)

- 수출물류비 폐지에 따른 농산물 수출 한계성을 극복하고, 시·군 특성에 맞는 수출 선도조직으로 육성하여 신선농산물 수출기반 조성 및 수출유망품목 발굴
- ※ 道 농식품유통과-2893(2025. 3. 28.)호와 관련

### 1. 사업개요

- 총사업비 : 60백만원 (도비<sup>20%</sup> 12, 시비<sup>70%</sup> 24, 자부담<sup>40%</sup> 24)
- 지원대상 : 관내 소재 신선농산물 수출 영농조합법인, 지역농협, 농업회사법인
- 지원내용 : 품질개선, 품질관리, 마케팅 물류, 조직화 및 운영관리 분야 등
- 대상자 자격 :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

※ 단, 대상자가 많을 경우, ①>②>③ 순위를 적용함.

- ① 전년도('24) 부류별 수출실적이 (당초)10만불 이상 → (변경)5만불 이상 인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지역농협
  - ※ 다만, 부류별 수출실적이 5만불 미만이라도, 특정 품목 수출액이 도내 전체 수출실적의 50%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(道 전체 수출실적은 별도 문의)
- ② '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전문생산단지 평가 “일반등급” 이상인 생산단지
- ③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수출통합조직(K-Pear, K-Berry 등)에 가입된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지역농협
  - ※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수출선과장, 선별장 운영 생산자 단체현황(별도 송부)

- 지원내용 : 물류표준화, 품질관리, 해외마케팅, 생산농가 조직화 등

※ 선도조직육성 세부 지원내용 : [붙임 1] 참조

### 2. 세부 추진계획

- 대상품목 : 과일류, 채소류, 화훼류, 견과류 등 신선농산물\*
  - \* 신선농산물 여부는 수출물류비 지급품목 분류에 따름
- 우대품목 : 딸기, 토마토, 파프리카, 상추류 등 스마트팜 생산농산물
- 선도조직 운영·관리
  - 道(농식품유통과)와 시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출 바이어 연결 등 우선지원
  - 선도조직과 사업참여 농가 간의 수출 농산물 공급을 위한 계약 체결
  - 자체 품질관리지도사 운영 및 농업기술원 품질관리 협력

□ 선도조직 지원 및 정산(변경)

※ 道 농식품유통과-2893(2025. 3. 28.)호 : 최대 한도 내에서 수출 실적에 따른 지원한도를 시군의 수출여건에 따라 별도의 계획 수립 후 최대 한도내 조정 가능

○ 지원내용 및 규모 : 조직당 최대 150백만원 지원(자부담 포함 총사업비)  
(당초)

수출실적 ( ' 24년)	10만불 이상 ~ 100만불 미만	100만불 이상~ 300만불 미만	300만불 이상 ~400만불미만	400만불 이상
지원한도(천원)	50,000	100,000	120,000	150,000

→ (변경)

수출실적 ( ' 24년)	5만불 이상 ~ 100만불 미만	100만불 이상~ 300만불 미만	300만불 이상 ~400만불미만	400만불 이상
지원한도(천원)	30,000	100,000	120,000	150,000

□ 사업비 정산

○ 사업기간 : 2025. 11. ~ 12.

○ 사업종료 후 지원조건 충족시, 항목별 정산기준에 따른 정산

조직명	사업목표		추진실적		목표달성률 (비 고)
	수출물량	참여농가	수출물량	참여농가	

※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실적 또는 수출물류비 지원실적

### 3. 세부사업 추진 절차

○ 사업추진 절차

**道** : 사업지침수립, 시군별 예산배정, 사업효과 분석  
(우수 바이어 추천, 유망품목 발굴, 컨설팅 지원)

① ↓ ↑ ④    ① 사업지침 및 계획통보    ④ 추진상황 및 정산보고

**시·군** : 자체 세부계획 수립, 사업 정산 및 평가  
(선도조직 선정 및 사업중간점검)

② ↓ ↑ ③    ② 사업지침 및 계획통보, 사업홍보    ③ 사업신청 및 정산보고

**선도농가** :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, 정산

---

○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

- 수출 선도조직은 참여농가 의견 반영 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시·군 제출
- 시·군은 제출된 사업계획 검토 등을 거쳐 지원 수출선도조직 선정

○ 사업시행 및 점검

- 도는 농업기술원과 협력하여 선도조직의 기술 컨설팅 지원 예정
- 선도조직은 확정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되,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군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며, 시군은 변경사항을 도에 제출

○ 자금집행

- 선도조직은 사업완료후 시군에 사업실적 및 정산서 제출
- 시·군에서는 사업실적을 확인하고, 사업 정산기준에 따라 정산
- 선도조직별 사업을 완료하고, 정산검토 후 개별통장에 보조금 지급
- 시·군에서는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정산 및 사업결과를 도에 제출

#### 4. 행정사항

- 농산물 수출선도조직 공고 및 신청 접수 : [붙임3] / 11월까지
- 보조사업자 선정 : 11월까지
-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 및 지급 : 12월 20일까지
-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사업비 정산서 도제출 : 2026년 1월까지

[붙임1]

선도조직 세부 지원내용(선진기술 습득 등 11개 사업)

지 원 항 목	비 고
<b>○ 품질개선 분야</b>	
·선진기술 습득	품목별 재배·생산·유통전문가 초청 컨설팅비 지원 등
·신품종 종자종묘 구입비	구근 등 우량 종자종묘 구입비, 수출특화품종 도입비 등
·안전성 확보사업	친환경재배 자재 구입비, 천적구입비, 친환경·GAP ISO등 품질 인증비용 등(G-GAP 등 해외인증 포함)
·선도유지 시설 및 장비	선도유지 시설, CA컨테이너 운송비, 전용컨테이너 사용
<b>○ 품질관리분야</b>	
·포장개선 지원	포장 디자인 개발, 금형제작 등
·검역요건 이행 비용	국내외 검역 훈증비, 검역요건 이행 농자재비, 수출용 소독 및 선도유지제, 수출선적용 목재 파렛트
·천적방제, 친환경 약제	수정벌, 천적, 친환경 약제 등
·선도유지제/ 살균제	이산화탄소 제거제, 이산화염소, 선도유지필름 등 지원
<b>○ 마케팅 물류 분야</b>	
·물류효율화 지원	수출용 목재 파렛트, PVC상자 임차구입비 및 지게차 임차 등 물류개선비
·Cold chain 유통지원	순회 수집차량 운영, 제품 저장보관, 연장제 구입비, 산지-선별장-수출업체 물류관리시스템 구축개선비용 등
·수출 마케팅 지원	수출브랜드 개발·등록, 홍보물제작, 판촉활동 등 지원
<b>○ 조직화 및 운영관리 분야</b>	
·수출전문조직의 결성 지원	조직화, 회의운영, 전문가 초청 경비 등
·수출전문인력 양성 지원	수출전문가과정, 무역대학, 농업벤처대학 등 교육비

[붙임2]

## 충청남도 농산물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정산기준

### 공통 기준

- 사업기간내 집행한 비용에 대해 지원하며 사업 추진은 조직 자부담으로 우선 진행하고, 사업 종료 후 지원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
- 정산 시 지출내역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(사본은 원본대조필)를 첨부하여야 함.
  - 모든 비용지급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첨부하여야 하며, 간이영수증은 불인정
- 해외에서 현지화폐로 집행한 비용은 집행시점의 환율 적용
  - 환율관련 증빙서류 미비시는 정산(지원)시점 외환 은행매도율 적용
- 본 사업과 동일 건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사업비를 중복해서 수혜 불가
  - \* 동일 건이라 함은 동일금액에 대해서 중복지원 받은 것을 의미함

### 항목별 세부 정산요령

#### □ 품질개선비

- 전문가 또는 해외바이어 초청 컨설팅 : 항공료 및 숙박비 지원
  - 항공료 : 이코노미 클래스 기준
  - 호텔비 : 1일 × 20만원<sup>(이내)</sup> × 5일<sup>(최대 5일)</sup> = 100만원 이내 \* 실비정산
  - 바이어 인적사항, 상담실적 등 보고서, 사진자료, 초청자 여권사본 제출
- 해외인증 관련 등록 및 컨설팅비 : 인증서 사본 첨부
  - 대상인증 : FSMA 컨설팅비, 글로벌GAP, 할랄인증, 코셔인증, 제품등록 등
  - 국내인증대행기관의 컨설팅비 및 해외인증기관의 인증비
  - 미국 식품안전법 관련 종업원의 건강검진 등 부대비용도 컨설팅비에 포함시 인정
  - 이미 취득한 해외인증의 인증기간 연장에 필요한 등록비도 지원 가능
- 우량 종자·종묘 구입비, 품질제고에 필요한 생산자재  
(토양개선제, 유기질비료 등) 구입비, 친환경재배 자재 구입비, 천적구입비
  - 수출선도조직(대표) 명의로 공동구입분에 한해 지원
  - \*친환경자재(미생물, 훈증제 등)는 등록고시된 제품만 지원 가능

## □ 품질관리비

### ○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비

\*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안전성관리 비용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

### ○ 혼증비용 : 해외발생비용에 대해서는 수출업체 앞으로 발급된 해외 혼증업체의 인보이스

- 국내 사전 혼증비용 : 국내 혼증업체의 세금계산서

※ 혼증약제는 농약관리법에 적합한 약제에 한하여 지원.

- 해외 수입국의 혼증비용 : 수출검역 불합격 통지서, 혼증비용 내역서, 송금확인서

※ 해외 혼증 발생 비용은 수출대행업체 명의로 발급된 수입국의 인보이스는 인정하나, 수출신고필증, BL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고, 농가별 3회 한도 제한

### ○ 검역요건 이행 농자재비 : 수출검역요건 이행에 필수인 농자재만 인정

- 對美 배 수출단지의 대미 수출용 배 봉지

- 수출검역용 필수 열처리 목재 파렛트 등

※ 기타 특정국가의 특정품목 수출검역이행을 위해 필수 농자재만 인정, 국내유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농자재는 지원불가

## □ 마케팅비 및 물류분야

### ○ 물류효율화 비용

- 물류표준설비 인증을 받은 파렛트, PVC상자, 지게차 등을 임차구입하는 비용

### ○ Cold chain 유통비용

- 순회 수집차량 임차, 제품저장기간 연장비용, 물류관리시스템 구축개선 비용 등

### ○ 판촉홍보 행사시 시식물품대

- 수출액의 10% 범위내 사전 협의를 통해 승인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

### ○ 통역·판촉요원 고용비

- 수출선도조직 주관으로 마켓테스트 또는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에 지원

- 행사기간내 고용에 한해 인정하며, 현지 통상적 보수 기준한도 내 지원

\* ex) 미국 : 200\$/일

-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사사진(판촉요원 포함) 및 ID카드 제출  
(없을 경우, 의료보험증 등 본인확인 가능한 증비서류 등)

## □ 조직화 및 운영관리

### ○ 조직활성화를 위한 국내 전문가 초청 경비 및 체재비 지원

-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강사당 지급 기준 준용(강사료, 숙박비, 여비, 식비 등)

### ○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전문가과정, 농수산무역대학 단기 무역과정 수강료

: 지원업체 수출 단기과정(1년이내 과정) 이수 수강료에 한해 지원